

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-923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. 11. 11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1. 제안이유

- 「안산시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시행에 따라 「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」 및 「안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 조례」의 “군인” 정의 수정 필요
-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청년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사회 복귀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정착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

2. 주요내용

- 가. 「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」 제2조 “군인” 정의 수정
- 나. 「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」 제2조 “군인” 정의 수정

3. 참고사항

- 가. 일부개정조례안 : 【붙임 1】
- 나. 신·구조문대비표 : 【붙임 2】
- 다. 관계법령발췌서 : 【붙임 3】
- 라.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- 마. 예산수반사항 : 해당사항 없음
 - ※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: 【붙임 4】
- 바. 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 - 입법예고 : 2025. 10. 01. ~ 2025. 10. 13. (12일간)
 - ※ 「안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 제3조제1호에 따라 단축
- 사. 기타 참고사항
 - 1) 현행조례 : 【붙임 5】
 - 2) 방침결정문 : 【붙임 6】

【붙임 1】

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등 2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1조(「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」의 개정)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9호 중 “「병역법」에 따라 복무 중인 하사 이하의 군인”을 “「안산시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 청년”으로 한다.

제2조(「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」의 개정)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0호 중 “「병역법」에 따라 복무 중인 하사 이하의 군인”을 “「안산시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 청년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국		문화체육관광국
입	체육진흥과장	이 자 영
안	체육시설팀장	박 은 영
자	담 당 자 (연 락 처)	장 한 신 (481-2148)

【붙임 2】

신 · 구조문대비표

제1조 「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」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8. (생략)</p> <p>9. “군인”이란 「병역법」에 따라 복무 중인 하사 이하의 군인을 말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8. (현행과 같음)</p> <p>9. ----- 「안산시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 청년-----.</p>

제2조 「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」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9. (생략)</p> <p>10. “군인”이란 「병역법」에 따라 복무 중인 하사 이하의 군인을 말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10. ----- 「안산시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 청년-----.</p>